의안번호	2209057
의 뢰 인	엄태영 의원
회 답 일	2025. 4. 15.
추계번호	25F165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에 따라 취득세는 2026년 569.5억원, 2028년 569.5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1,708.5억원(연평균 569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(제36조의5)	−569.5	−569.5	−569.5	−1,708.5	−569.5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6조의5 (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)	○ 출산 가구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–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28. 12. 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36조의5 (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
❑ 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년 취득세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지자체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실적은 569.5억원 수준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❑ (제도 개요)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(안 제36조의5)

○ 주택의 취득 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(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 포함) 산출세액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

-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: 취득세 100% 면제
- 취득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: 취득세 500만원 공제

○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28. 12. 31.

- 현행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

○ 본 조문은 2023년 12월 29일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

❑ (감면 실적) 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4년 569.5억원 수준

○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2024년 취득세 감면실적은 13,391건, 569.5억원이며 이는 잠정치로 향후 「지방세통계연감」 수치와 다를 수 있음

- 현재 동 조문의 감면실적은 「지방세통계연감」으로 확인 불가

[표 2]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실적: 2024년

	2024
감면건수(건, A)	13,391
감면액(억원, B)	569.5
건당 감면액(만원, B/A)	425

주: 2024년 감면실적은 지자체 제공자료로 향후 발표되는「지방세통계연감」수치와 다를 수 있음
자료: 지자체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❑ 향후 취득세 세수효과는 2024년 감면실적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○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취득세 감면 실적인 569.5억원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동 조문은 2024년부터 시행

(3) 추계결과

❑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에 따라 취득세는 2026년 569.5억원, 2028년 569.5억원 등 2026~2028년까지 3년간 총 1,708.5억원(연평균 569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(제36조의5)	−569.5	−569.5	−569.5	−1,708.5	−569.5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